5. 대학원 및 사회복지카리타스대학원 편입학내규(2022.6.21. 명칭변경)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꽃동네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1조에 의하여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6.22.개정)(2022.2.8. 자구수정)(2022.6.21. 자구수정)

제2조(편입학자격) 대학원 및 사회복지카리타스대학원(이하 "대학원")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 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2022.6.21. 자구수정)

제3조(편입학전형)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시험이나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한다.(2022.6.21. 자구수정)

제4조(편입학사정) 대학원장은 시험이나 서류전형, 면접고사 등을 실시한 후 입학사정표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총장이 허가한다.(2022.6.21. 자구수정)

제5조(지원서류) 대학원 편입학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2.6.21. 자구수정)

1. 편입학 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수료증명서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수료 학기까지의)대학원 성적증명서
4. 수학계획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제6조(학기 및 학점 등의 인정) ① 편입학자의 학기 및 학점의 인정은 전적 대학원의 이수내용과 성적증명을 근거로 전공 주임교수의 의견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전적 대학원 이수학기 및 학점	인정 이수학기 및 학점	비고
1학기 6학점 이상	1학기 6학점까지	
2학기 12학점 이상	2학기 12학점까지	

② 편입학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어학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편입학자의 합격사정, 등록 등 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칙, 학사시행세칙을 준용한다.(2022.6.21. 자구수정)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